

2025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판로지원」 모집 공고

충청남도과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급변하는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판로지원」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재)충남경제진흥원장

1. 모집개요

(지원규모) 21업체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2024. 1. 1. 이전 소상공인
- 온라인 판매를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소상공인(통신판매업신고증 기준)
- 라이브커머스로 판로 확대 희망 및 진출 희망하는 소상공인
 - * 활성화 단계(7업체) : 성장 잠재력(매출, 업력 등)이 큰 소상공인
 - * 진출 단계(14업체 내외) : 온라인 시장 진출 희망하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소상공인
- 온라인 유통(판매)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필수)** 및 유통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및 판단기준 >

- 소상공인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주업종 판단기준: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된 업종

※ 신청 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소상공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지방세·국세 체납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소상공인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 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소상공인
 - 도·소매(단순 유통)만 하는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통신 판매 부적절 제품
- 기타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취소
- 2024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수혜업체

2. 지원내용

○ 지원방법

- (간접지원) 라이브커머스 방송사에 비용 지원(우체국 쇼핑몰 예정)
- 1회 방송 업체 수: 3업체(상품수는 방송사와 협의·조정)
 - * 1회 방송 업체수: 그룹 방송(활성화 1업체 + 진출 2업체로 구성)

○ 지원내용

- 우체국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방송 지원
 - * 쇼호스트, 전문 스타일리스트, 무료 제품 연출 및 상세사진 촬영 제공 등
 - * 우체국 쇼핑몰 회원 대상 광고(사전 마케팅) 등
- 우체국 쇼핑몰 입점(필수) 지원(입점서류 간소화, 기 입점자 제외)
- 라이브커머스 방송 현장 체험 기회 제공
- 방송 준비 및 방송 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전략 컨설팅 제공 등

○ 자부담 항목

- 사전 마케팅(SMS 등) 비용, 판매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 식식, 취소 및 반품, CS, 기타 판매에 따른 제반 비용 등

【참고: 우체국 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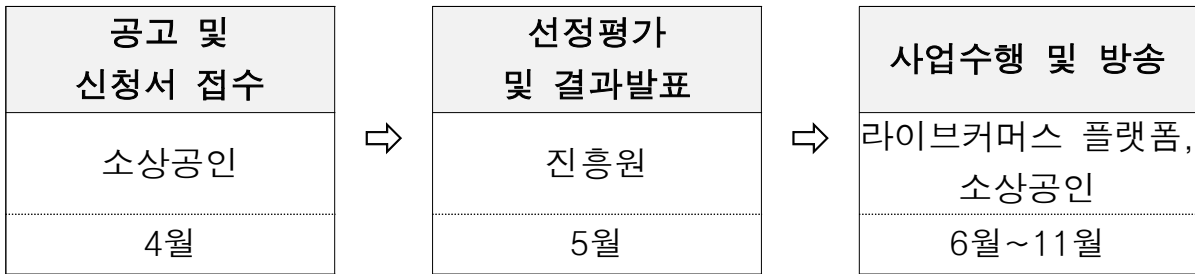
-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쇼핑몰
 - 주소: 대전 서구 문정로28(탄방동 600번지) 청솔빌딩 6층, 7층
 - 홈페이지: <https://mall.epost.go.kr>

		
우체국 쇼핑몰(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및 제품 준비실	

- 방송 사례

	• 업체명 : 추석DOWN추석 • 상품 : 1방송, 3품목(꽃감, 한우, 전복) • 방송시기 : 2023. 9. 14. • 성과 : 112,738,800원 매출
---	--

3.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 · 접수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 4. 30.(수) 14:00까지

(신청방법)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 통합지원시스템 URL : <https://www.cnsp.or.kr>

※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선택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 모두 필수 서류이므로, 1가지라도 미제출시 사업 신청 불가함

구분	제출서류(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 ※서류 발급 방법 <참고 1> 참조
1	지원신청서 및 상품소개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통신판매업신고증
5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6	- 소상공인확인서(최근 3개월) * ‘소기업(소상공인)’ 문구 기재시 인정(‘소기업’만 기재된 경우 불인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불인정 또는 고용원 확인 서류(최근 3개월) * (고용원 없을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원 있을 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23~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8	기타 가점사항에 적합한 증빙서류

5. 평가 및 선정

- (1단계, 정량평가) 적격여부 판단 및 2배수(42업체 내외) 선정
 - * 업력(20점), 매출 상승률(30점), 운영 역량(온라인 판매 플랫폼)(10점)
- (2단계, 정성평가) 외부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류평가
 - * 지원의 필요성(20점), 상품성(20점)
- (가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 5점, 증빙 미제출시 불인정
 - 국가 및 충남도 지원사업 마케팅 교육(3시간 이상)이수자(이수증)
 - * 24~25년도 국비사업: 중기부 디지털 특성화 대학 등
 - 24~25년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글로벌 판매 경험 소상공인(증빙)
 - * 해외 배송의 경우만 인정
- (선정방법) 정량평가점수(100%)+정성평가(100%)+가점 합산 고득점순
 - * 동점자 발생시 업력이 오래된 順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선정취소)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이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
-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내(~11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선정포기)

- 지원 포기 시 포기신청서 제출(7.1일 이후 포기자 제재)
 - * [서식 5]포기신청서

(지원금 지급 방식)

-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지정한 라이브커머스 대행업체 지급

***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별도 지급 안함**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통합지원시스템)으로만 가능. 신청기한 이후 제출 불가하오니 기한 준수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신청하신 단계(진출, 활성화)를 바탕으로 각 단계의 목표와 신청업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성과관리(매출 및 성과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함
-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후 발생하는 판매 실적 및 상품 관련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대 목표 이하 실적이나 손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선정기업 지원사항 외 요구사항 또는 돌발상황 등으로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유의사항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

참고 1

제출서류 발급 방법

구분	제출서류		발급방법
공통 서류	① <서식1>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https://www.cnsf.or.kr/main.do 서식 다운로드 → 작성
	② <서식2>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상품소개서		
	③ <서식3> 개인(업체)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서식4> 준수사항 및 이행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온라인 발급: - 홈택스 (www.hometax.go.kr)
	⑥ 통신판매업신고증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온라인 발급: - 정부24 (www.gov.kr)
납세 확인	⑦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온라인 발급: - 정부24 (www.gov.kr) - 위택스 (www.wetax.go.kr)
			·오프라인 발급: -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발급
소상 공인 확인 서류	⑧ 셋 중 1가지 제출	·소상공인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고용인원 없 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FAX수신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고용인원 있 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온라인 발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오프라인 발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방문
	⑨ 매출액 확인서류(2023년~2024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온라인 발급: - 홈택스 (www.hometax.go.kr)
			·오프라인 발급: 관할세무서

참고 2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9.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3

지원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